

	<b>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b>	제정일	2018.10. 1
		개정일	2024. 3. 1
		개정차수	8차
		담당부서	학사학위지원센터

##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동서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이라 한다.) 학칙 제4조의2에 의거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과정의 명칭은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이라 한다.

제 3조 (위치) 본 과정은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에 둔다.

제 4조 (설치학과 및 모집인원) 본 대학교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이하 “학사학위과정”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며, 설치학과는 학칙 제4조의2에 명시한다.

##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 5조 (수업연한) 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또는 2년으로 하며, 전문학사학위과정 3년제 졸업자는 1년 이상, 2년제 졸업자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수업연한에 따른 학과는 학칙 제5조 제2항에 명시한다.

제 6조 (재학연한) 재학연한에 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 3 장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제 7조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① 학사학위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의 50%이상은 산업체 인사로 한다. (개정 2020. 3. 1, 2021. 4.15)

③ 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4 장 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8조 (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9조 (학기 및 학기개시일) 본 대학 학칙 제8조(학기 및 학기개시일)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0. 8.10, 2023.11. 1)

[제목개정 2023.11. 1]

- 제10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감염병 등에 따른 국가적 재난 등 위기단계 발생 시 수업일수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8.10)
- 제11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10월 2일)  
 ②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은 매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 제12조 (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제 5 장 입 학

- 제13조 (입학시기) 신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은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 제14조 (입학자격)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산업체 경력이 있는 자와 산업체 경력이 없는 자로 한다.
- 제15조 (입학지원) 입학지원 및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16조 (입학전형) 학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시행 계획에 의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17조 (입학허가) 입학허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 제18조 (재입학) ①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 또는 졸업이 취소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부(과)에 한한다.
- 제19조 (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6 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 제20조 (휴학/복학/자퇴/제적) 본 대학 학칙 제19조 내지 제21조를 준용한다.

## 제 7 장 교육과정 및 수업

제21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에서 현장실무중심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3. 1, 2020. 8.10, 2023.11. 1)

제22조 (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해당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교과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이수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고, 세부 졸업요건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학사학위과정 1년제 학과 : 20학점 이상

2. 학사학위과정 2년제 학과 : 60학점 이상

다만, 전공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으며,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전문학사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 2023. 1. 1)

③ 학생은 매 학기 6학점 이상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 1년제 14학점, 2년제 18학점을 초과 수강하지 못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얻어 6학점 미만을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

④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별 6학점 이내로 한다.

제24조 (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현장실습수업, 교외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학사제도의 유연성을 위하여 집중이수제를 통해 제1항의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매학기의 개설교과목은 그 학기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④ 수업시간은 1교시를 50분으로 한다. 단, 야간수업은 1교시를 45분으로 한다. 다만,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교외수업, 집중이수제의 수업 시간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3. 1]

## 제 8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5조 (평가시험) ① 성적평가는 주·객관식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6조 (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② 교과목별 성적분포의 표준화를 위하여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상대평가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 비율에 따른 인원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절삭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0. 1, 2024. 3. 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등급	비율
A+~A0	40%이내
B+이하	60%이상

- ③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교과목은 학점관리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2.10. 1)
- ④ (삭제 2022.10. 1)
- ⑤ 미 취득 교과목의 재수강 신청은 필수 과목을 우선하여야 한다.
- ⑥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받은 대체인정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다.
- ⑦ 재수강은 해당교과 개설학기에 맞추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⑧ 재수강 신청 시 기 취득한 성적은 취소되며, 재수강으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단, 기 취득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재수강으로 표기한다.
- ⑨ 이전에 취득한 학점이 D+이하인 교과목에 한해 재수강하여 학점을 승급할 수 있다. 단,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 ⑩ 재수강 신청 교과목은 학기별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단, 기취득한 교과목이 F등급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0. 3. 1]

- 제27조 (성적의 정정 및 취소) ①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이를 정정 및 취소할 수 있다.
- ② 성적 정정 및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8조 (학사경고) ① 재학 중 1학기 당 취득 성적의 평점평균이 1.50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 ② 학사경고 사항은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1]

- 제29조 (졸업 및 수료)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2조 제2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 1의 서식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② 학사학위과정에서 소속 전공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2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속 전공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1)
1. 1학년 수료 : 1년제는 20학점 이상, 2년제는 30학점 이상 (개정 2019. 2. 1)
  2. 2학년 수료 : 60학점 이상 (개정 2019. 2. 1)
- ③ 기 부여된 학점의 취소로 인하여 졸업당시 학년도 졸업사정 기준에 미달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가 수여되었을 경우 학부(과)장 회의의 심의를 거쳐 졸업 및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 제 9 장 자체평가

- 제30조 (자체평가) 학사학위과정에 대한 교육품질관리를 위해 위원회는 매년 1회 모집단위별 학사학

위과정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평가방법)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거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1. 자체평가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년도 학사학위과정 운영에 반영
2. 만족도 조사 : 관련 산업체 및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

제32조 (자체평가 결과 보고) 학사학위과정 운영 학과장은 학사학위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을 반영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자체평가 보고서’를 매년 1회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15)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학칙 및 학사내규를 준용하며, 기타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제 호

## 학 위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학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서 울 대 학 교 총 장

학위등록번호 : 동서울-연도-(학)○○○○(일련번호)

【별지 2】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과 학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서 울 대 학 교 총 장